

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

정관

제정 : 2019. 05. 13.

개정 : 2019. 10. 04.

개정 : 2021. 12. 06.

개정 : 2022. 03. 31.

개정 : 2024. 03. 29.

제1장 총칙

제 1 조 (상호)

이 회사는 “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”라 하고, 영문으로는 “Oha Asset Management Co., Ltd.”로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(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인·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)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**자본시장법**”) 제9조 제 28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
2.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
3. 기업경영, 재무 및 인수·합병 관련 자문
4.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
5. 국내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,연구,분석 및 용역 제공
6.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부동산, 주식 기타 유가증권,금전채권,부실채권 등 기타 자산에 대한 투자
7.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및 투자의사결정 지원

8. 자산가치평가
9. 채권매입·매각 및 매입재산의 관리
10.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자문
11.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
12.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
13. 부동산 임대업 (2022. 03. 31 개정)
14.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모집, 설립, 출자 및 운용 등에 대한 업무 (2024. 03. 29 신설)
15. 기타 위 각 호의 목적달성에 직·간접적으로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

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)

-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-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, 현지법인 또는 기타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공고의 방법)

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다만, 폐간, 휴간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2장 주식

제 5 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백만(4,000,000)주로 한다.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

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(W5,000)으로 한다.

제 7 조 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삼십만(300,000)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의 종류)

-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.
-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
제 9 조 (이익배당 및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)

- ① 회사는 이익배당 및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종류주식”)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이백만(2,000,000)주로 한다.
-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을 한다.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% 이상 10%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등한 비율의 배당을 한 후,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.
-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-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.

제 10 조 (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)

- ①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**상환주식**”)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.
-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상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.
- ⑤ 상환기간(또는 상환청구 기간)은 상환주식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.
- ⑥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(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)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)

- ① 회사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**전환주식**”)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전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전환비율은 전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.
-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2 조 (주권의 종류)

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 및 주주가 적절히 요청하는 단위의 주권으로 한다.

제 13 조 (주식의 발행 및 배정)

- 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②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.
 - 1. 이사회 결의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2.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
 - 3. 증권예탁증권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4.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
 - 5.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, 일반법인, 기타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
 - 6.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
 - 7.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14 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

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5 조 (명의개서 등)
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6 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

-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

제 17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
-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장 사채

제 18 조 (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백억원(W10,000,000,000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. 다만,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
-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-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0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
-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일백억원(W10,000,000,000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. 다만,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
-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1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

제15조,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4장 주주총회

제 22 조 (소집시기)

-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23 조 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4 조 (소집통지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제 25 조 (소집지)

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(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)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7 조 (주주의 의결권)

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제 28 조 (의결권의 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주주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3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,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30 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.

제5장 이사

제 31 조 (이사의 수)

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제 32 조 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3 조 (이사의 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임기를 정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34 조 (이사의 보선)

-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제 35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)

-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출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,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6 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)

- ①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-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8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회사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.
1.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4.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
 5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6.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 7. 대주주·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 8.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
 9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
 10. 기타 회사의 주요한 경영에 관한 사항
-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39 조 (이사회의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,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0 조 (이사회 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1 조 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6장 감사

제 42 조 (감사의 수)

-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
-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3 조 (감사의 임기)

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

제 44 조 (감사의 보선)

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4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45 조 (감사의 직무 등)

-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- ⑧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과 관련한 사항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6 조 (감사록)

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7 조 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7장 계산

제 48 조 (사업연도)

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9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

-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대차대조표
 - 2. 손익계산서
 -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 - 4.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속명세서
 - 5. 영업보고서
-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③ 감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- ⑤ 대표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표이사는 제5항에 따라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0 조 (이익잉여금의 처분)

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1. 이월결손금의 보전
- 2.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 적립
- 3. 기타 법정적립금
- 4. 주주배당금
- 5. 임의적립금
- 6. 차기이월금

제 51 조 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.
-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그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,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④ 회사가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경우,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제 52 조 (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.

제8장 기 타

제 53 조 (기타)

-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결의 또는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의 한다.
- ② 회사는 업무수행과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세칙 또는 내규를 정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최초의 사업연도)

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9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2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사의 정관과 상위 없음

2024년 03월 29일

주식회사 오하자산운용
대표이사 이 화 란